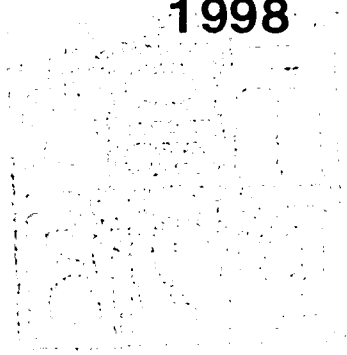


남 북 교 역 실 무 안 내

1998



통 일 부

목 차

I.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5
1.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립	5
2.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노력	7
(1)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7
(2)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수립 및 지원.....	9
(3)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10
3. 남북교역 약사	14
II. 남북교역 현황	17
1. 물자교역	17
(1) 교역규모.....	17
(2) 교역형태·품목	18
(3) 위탁가공교역.....	25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26
(1) 개항.....	26
(2) 남북간 선박운항	27

Ⅲ. 남북교역 추진 절차	30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왕래	30
(1) 북한주민접촉	30
(2) 남북한 왕래	35
2. 남북교역	43
(1) 남북교역의 개념	43
(2) 남북교역의 당사자	44
(3)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45
(4) 남북교역 추진 절차	47
(5) 위탁가공교역	63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64
(1) 손실보조	66
(2) 자금대출	72
(3) 채무보증	76
(4) 금융기관 지원	78
(5)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78
(6) 지원유형간의 관계	80

<부록>

남북교역 관련 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8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91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8
4.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110
5.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112
6. 남북한 교역 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116
7. 남북한 간 수송 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고시128
8. 남북 교역 물품 통관 규정130
9.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37
10. 국내 기업 및 경제 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143
11.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 지침148
12. 남북 협력 기금법160
13. 남북 협력 기금법 시행령164
14. 남북 협력 기금법 시행규칙170
15. 남북 협력 기금 운용 관리 규정172
1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3
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197
18. 남북 교류·협력 공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4

I.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립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7·7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인정하고, 이듬해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 접촉도 일부 성사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 8. 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됨으로써 남북한간 화해·협력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간의 합의사항들은 북한이 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199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을 거부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추진 기반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갑작스러운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교역품목통관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부산 등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지부 10개소에 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남북한 교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요하는품목’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오던 반출·입 승인 제도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1998년 4월에는 IMF구조금융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남북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노력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 추진의 3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의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남북간 단절의 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의 바탕을 공고히 하고 남북간 상호이익과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류와 협력의 증진은 남과 북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현실적인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도모함은 물론, 민족공동의 발전, 나아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경협이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1)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한과 관련국간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진전시

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인 방북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 등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94. 11. 8)>

□ 기본방향

- 북한 핵문제·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신축적으로 경협 확대
 - 북한 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에 따라 민간차원의 「기업인 방북」,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시범경협」 우선 허용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분야별 경협 본격 추진」 등으로 확대
-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상호 보완과 호혜의 바탕에서 남북 모두의 실리를 도모하도록 추진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이 법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조치내용

- ① 기업인 방북 등 남북 경제인사 상호방문 허용
 - 「시범사업」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 허용
 -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북은 사안별로 허용
 - 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및 우리 산업현장 견학 등의 사업 추진 허용
- ②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기술자 방북 허용

-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 요원 등
- 수시방북 절차 간소화 등 편의지원 방안 강구
-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시설재 반출 허용
 - 대규모 또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 등의 반출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 기타 소규모 설비는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으로 반출
- ※ 시설재 반출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③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시
 -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용품분야
 - 단기간내 경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민족공동체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 민간차원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 ※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른 추진방향
 -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
 - 시범경험의 경험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험 활성화
 - 장기적으로 SOC, 식량, 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 등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수립 및 지원

1995년 들어와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무역질서

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교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남북교역물품 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였다.

즉 대외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확대 등 대외무역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남북교역이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역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교역품목의 구분과 관계없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품목 구분을 그대로 남북교역 품목 구분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동 고시의 개정으로 남북교역 고유의 교역대상품목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의 독자성이 제고되었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5.1.3)>

-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자유화 등 대외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225개 품목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역 품목을 국제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을

대북정책의 3원칙으로 제시하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확대추진을 천명하였다.

정경분리원칙 적용은 첫째, 남북간 정치문제와 경협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둘째, 민간주도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협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셋째,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진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경협이 정치적 문제에 제약을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면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98. 4. 30)>

□ 기본방향

-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노력

□ 조치내용

○ 접촉·방북

-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연장(1년→3년)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현행 20일→15일

• 방북 : 현행 30일→20일

○ 교역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포괄승인 품목」의 지속적 확대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 협력사업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화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사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사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또한 정부는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의 대북 반출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98. 6. 19) —

-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100만불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문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승인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의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함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명시하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3. 남북교역 약사

일 자	주 요 내 용
'88. 7. 7	○「7·7선언」 발표
'88.11.14	○최초 반입승인(대우, 도자기 519점, 104천불)
'89. 1.26	○최초 반입통관(효성물산, 전기동 200톤, 660천불)
'89. 6.12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89. 2. 4	○최초 반출승인(현대상사, 잠바 5,000벌, 69천불)
'90.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90. 8.13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90. 8.31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제정(관세청)
'90. 9.25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90. 9. 4 - '92.9.18	○제1-8차 남북고위급 회담
'91. 5.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 -미술품·우표·화폐 등을 반입제한품목으로 분류
'91. 7. 1	○교류협력국 창설 ○반·출입승인 1억불 돌파(반입 105백만불, 반출 12백만불)
'91.12.10 -12.13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제5차 고위급회담)
'92. 1.16 - 1.26	○대우 김우중 회장 북한방문
'92. 9.17 - 9.18	○「3개 부속합의서」 채택(제8차 고위급회담)
'92. 9	○최초 위탁가공교역(코오롱상사, 셔츠 6,216벌, 38천불 반입)
'92.10. 5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대우)
'93. 3.12	○북한 NPT탈퇴선언

'93. 3.19	○이인모 송환
'93. 7	○반출·입승인신청서류 간소화(재무제표 등 참고자료 제출 생략)
'94. 2. 5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관세청)
'94. 6.20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94. 7. 8	○김일성 사망
'94.12. 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승인절차 명시
'94.12.31	○반·출입 통관누계 7억불 기록
'95. 1. 3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WTO체제 출범 관련 품목구분
'95. 4	「남북한교역대상물품통관관리지침」 제정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95. 4. 1	○남북교역 상담창구 확대 - 무역협회 부산지부등 10개 지부에 남북교역 상담창구 개설
'95. 5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대우)
'95. 6.25 -10. 7	○쌀 15만톤 대북 지원
'95.12.31	○반·출입 교역규모 연 2억불 돌파
'95.12.15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6. 1.26	○최초 합영회사 설립(대우 → 민족산업총회사)
'96. 3. 5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HSK분류표 개정에 따른 품목개정
'96. 4.16	○「4자회담」 제의
'96. 5.13	○LG 대북임가공으로 생산한 컬러TV 첫반입
'96. 7. 6	○대우 기술자 최초 방북승인
'96. 9.18	○잠수합사건 발생
'96.12.29	○잠수합사건 사과성명 발표
'97. 1.15	○소형선박(2,000톤급 미만)의 인천항 입항금지조치 해제

'97. 4. 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절차 폐지에 따른 절차 변경 등
'97. 7.10	○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항승인 절차 간소화
'97. 9.13	○ 북한 영공개방 합의
'97.12.31	○ 남북교역 규모 연 3억불 돌파(누계 15억5천만불)
'98. 1.12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98. 2.25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대통령 취임사)
'98. 3. 2	○ 최초 평양 FIR 통과항로 시범운항(대한항공)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98. 6.16 - 6.23	○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북한방문
'98. 6.19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 경협활성화 조치사항 반영

Ⅱ. 남북교역 현황

1. 물자교역

(1) 교역규모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치 발표후 첫해인 1989년의 교역량은 1천9백만달러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로 첫 2년간은 2천만달러 이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 등이 제정·시행되어 남북간의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다다랐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험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2억5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따라 교역량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1997년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

으로 총 15억4천만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12억5천만달러, 반출이 2억9천만달러이다. 1995년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쌀 15만톤 약 2억4천만달러를 포함하면 총 교역량은 17억5천만달러이다.

<남북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95	976	99	222,855	1,668	90	64,435	2,644	189	287,290
'96	1,475	125	182,399	1,908	102	69,638	3,383	227	252,037
'97	1,833	145	193,069	2,185	129	115,269	4,018	274	308,338
총계	6,547		1,252,305	6,216		293,381	12,763		1,545,686

주 : '95년 대북 쌀 지원(150,100톤, 237,213천달러)을 제외한 수치임

(2) 교역형태·품목

가. 교역형태

북한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역은 대부분이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약재와 농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에 대해 북한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는 직접교역 방식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약재와 농산물 및 위탁가공교역의 일부품목은 남북간 직접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반입과 반출의 비율은 초기에는 10:1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6년에는 3:1, 1997년에는 1.7:1로 반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가공교역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증가와 KEDO가 지원하는 중유, 경수로물자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나. 반입품목

① 품목별 구성비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를 비롯하여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 주로 1차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철강금속과 광산물의 반입 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면서 2차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철강금속의 비중은 50%선으로 최대 교역품목이다.

1997년 반입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철강금속류 49.7%, 섬유류 24.7%, 농림산물 5.4%, 수산물 7.5%, 화학제품 6.5%, 기계전자 1.8%, 광산물 0.1%, 경수로물자 재반입 1.4%, 기타 2.7%로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반면 섬유류와 농림산물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반입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품목	농입 산물	수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석유류	화학 제품	기계 전자	경수로 물자	기타	계
'89-'90	5,345 (17.3)	566 (1.8)	2,693 (8.7)	19,602 (63.4)	1,515 (4.9)	-	-	-	1,212 (3.9)	30,933 (100)
'91	4,600 (4.3)	3,053 (2.9)	6,619 (6.3)	86,046 (81.4)	1,588 (1.5)	1,672 (1.6)	-	-	2,144 (2.0)	105,722 (100)
'92	10,435 (6.4)	5,085 (3.1)	14,579 (8.9)	125,416 (77.0)	3,683 (2.3)	1,248 (0.8)	-	-	2,417 (1.5)	162,863 (100)
'93	9,674 (5.4)	878 (0.5)	1,371 (0.8)	154,263 (86.6)	8,945 (5.0)	663 (0.4)	-	-	2,372 (1.3)	178,166 (100)
'94	12,061 (6.8)	2,723 (1.6)	1,448 (0.8)	136,340 (77.3)	18,500 (10.5)	954 (0.6)	-	-	4,272 (2.4)	176,298 (100)
'95	17,768 (8.0)	2,692 (1.2)	3,001 (1.3)	165,590 (74.3)	28,852 (13.0)	56 (-)	15 (-)	-	4,881 (2.2)	222,855 (100)
'96	12,055 (6.6)	9,599 (5.3)	1,750 (1.0)	107,611 (59.0)	45,039 (24.7)	73 (-)	1,800 (1.)	-	4,472 (2.5)	182,399 (100)
'97	10,402 (5.4)	14,572 (7.5)	257 (0.1)	96,024 (49.7)	47,717 (24.7)	12,644 (6.5)	3,449 (1.8)	2,788 (1.4)	5,216 (2.7)	193,069 (100)
계	82,340 (6.6)	39,168 (3.1)	31,718 (2.5)	890,892 (71.1)	155,839 (12.4)	17,310 (1.4)	5,264 (0.4)	2,788 (0.2)	26,986 (2.2)	1,252,305 (100)

주 : 농입산물에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은 구성비율임

② 주요 반입물품

주요 반입물품은 금괴, 아연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나프타, 철스크랩, 냉동문어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위탁가공교역의 증가에 따라 셔츠류·바지류 등 위탁가공에

의한 완제품의 반입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주요 반입물품>

(단위 : 천달러)

'95			'96			'97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금 피	6,409kg	78,156	금 피	4,738kg	58,764	금 피	4,133kg	46,221
아 연 피	47,789t	49,982	아 연 피	29,381t	30,658	아 연 피	24,546t	33,354
빌 레 트	68,502t	16,182	자 켓 류	1,135천대	17,317	나 프 타	62,000t	12,539
남자자켓	56,966매	10,617	빌 레 트	38,399t	9,132	자 켓 류	769천대	12,152
열연코일	44,861t	10,213	면 타 월	62,325천대	7,803	첼스크랩	56,105t	8,308
한 약 재	-	6,626	서 츠 류	861,506매	5,578	서 츠 류	165a만pc	7,966
은 피	34,267kg	5,805	바 지 류	535,303매	5,060	면 타 월	4,356만pc	7,915
남자바지	42,180dz	5,447	은 피	26,955kg	4,587	냉동문어	2,366t	6,281
호 두	2,518t	4,806	냉동문어	1,215t	3,278	바 지 류	68만pc	6,107
전 기 동	1,249t	3,685	복 어	474t	3,198	코 트 류	14만pc	3,832
면 타 월	2,877천dz	2,961	스 웨 터	586,346매	2,672	칼 라 TV	18,508대	2,971
남자서츠	30,888dz	2,764	슈 트 류	120,108매	2,188	빌 레 트	12,242t	2,871
여자서츠	13,501dz	2,291	로얄제리	18t	1,960	버 섯 류	114t	2,679
아크릴사	1,167t	2,138	팔	3,023t	1,701	슈 트 류	14만pc	2,350
초제방석	279,116sm	1,965	선 철	9,843t	1,529	복 어	328t	2,064
무 연 탄	27,232t	1,212	신발갑피	-	1,363	은 피	11,678kg	1,906
낙 화 생	1,505t	1,189	칼 라 TV	8,052대	1,313	등 유	11,222천ℓ	1,758
선 철	6,508t	1,070	아크릴사	548t	1,179	소나무꽃가루	123t	1,629
버 섯 류	57t	1,018	전 기 동	501t	1,009	생 대 합	1,578t	1,527
기 타	-	14,728	기 타	-	22,110	기타의류	16만pc	1,399
						백 출	398t	1,322
						간 호 두	282t	1,283
						전 기 동	606t	1,282
						가 방 류	96,334u	1,202
						페로실리콘	1,838t	1,142
						명 태	2,583t	1,120
						기 타	-	19,889
계		222,855	계		182,399	계		193,069

주 : 대상품목은 연간 1백만달러 이상 반입물품

다. 반출품목

① 품목별 구성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최대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품목 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KEDO의 중유 반출로 화학제품의 비중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

1997년 반출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9%, 화학제품 26.6%, 경수로물자 15.5%, 농림수산물 6.9%, 기계전자 4.5%, 철강금속류 0.5%, 기타 11.0%로 전년에 비해 섬유류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화학제품과 농림산물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구매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출품목 현황>

(단위 : 천불)

연도 품목	농림수 산물	섬유류	기계 전자	화학 제품	철강 금속	경수로 물자	기타	계
'89-		69	1,094	83			10	1,256
'90	-	(5.5)	(87.1)	(6.6)	-	-	(0.8)	(100)
'91	1,607 (29.0)	25 (0.5)	447 (8.1)	3,468 (62.5)	-	-	-	5,547 (100)
'92	64 (0.6)	496 (4.7)	22 (0.2)	7,932 (75.1)	1,957 (18.5)	-	92 (0.9)	10,563 (100)
'93	6 (0.1)	6,274 (74.5)	463 (5.5)	1,096 (13.0)	34 (0.5)	-	552 (6.6)	8,425 (100)

'94	151 (0.8)	12,856 (70.5)	39 (0.2)	1,349 (7.4)	243 (1.3)	-	3,610 (19.8)	18,248 (100)
'95	865 (1.3)	38,793 (60.2)	1,806 (2.8)	11,567 (18.0)	1,559 (2.4)	-	9,845 (15.3)	64,435 (100)
'96	3,162 (4.5)	42,396 (60.9)	3,351 (4.8)	14,603 (21.0)	103 (0.1)	-	6,023 (8.6)	69,638 (100)
'97	8,004 (6.9)	40,219 (34.9)	5,212 (4.5)	30,670 (26.6)	586 (0.5)	17,842 (15.5)	12,736 (11.0)	115,269 (100)
계	13,859 (4.7)	141,128 (48.1)	12,434 (4.2)	70,768 (24.1)	4,482 (1.5)	17,842 (6.1)	32,868 (11.2)	293,381 (100)

주 : ()안은 구성비율임

② 주요 반출물품

주요 반출물품은 직물류, 의류부속품, TV부속품 등 위탁가공교역 원부자재이며, 특히 1997년에는 경수로 물자, KEDO 지원중유와 밀가루·분유·감자 등 「한적」의 대북 지원물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주요 반출물품>

(단위 : 천달러)

'95			'96			'97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직 물 류	15,279천yd	22,874	직 물 류	-	23,181	직 물 류	-	30,525
중 유	120,636t	10,778	중 유	112,072t	12,782	중 유	267,642t	29,019
설 탕	16,124t	7,322	의류부속품	-	8,367	경수로물자	-	17,540
의류부속품	-	4,377	테트론섬	2,444t	2,482	의류부속품	-	8,407
스웨터원부자재	1,491t	3,102	설 탕	5,721t	2,325	설 탕	10,443t	4,021
재 봉 사	274t	2,770	레 이 블	-	2,248	밀 가 루	9,905t	3,208
테트론섬	1,050t	1,666	TV부속품	-	1,549	분 유	515t	2,081
동 정 광	2,782t	1,448	분 유	278t	1,415	TV부속품	15,068u	1,786
단 추	119,644개	967	LDPE	688t	1,329	신발부속품	111t	1,026
지 퍼	22,488gs	886	지 퍼	3,869,292pc	1,201	감 자	2,200t	1,000
오 리 털	58t	801	신발부속품	951t	1,182	패 트 병	500t	874
레 이 블	-	668	단 추	-	1,055	굴 착 기	12u	815
패 트 병	2,894천개	533	오 리 털	65t	937	라 면	604t	772
밀 가 루	2,100t	454	이크린스원부자재	249t	846	비 료	2,654t	722
이크린스원부자재	179t	391	밀 가 루	2,135t	809	식 용 유	665t	598
신발갑피부속품	10,848dz	338	재 봉 사	271t	782	소 가 죽	39,773M	592
조 미 료	200t	257	조립식패널	258t	639	조 미 료	2	581
종이상자	508th	249	고 무	494t	593	LDPE	458t	558
LDPE	489t	236	스웨터원부자재	168t	514	펄 프	668t	503
기계부품	-	232	패 트 병	89t	319	오 리 털	994t	484
매 탄 윤	996t	222	문 어	105t	304	아 연 피	25t	375
담 요	8,000매	220	소 가 죽	16,050M2	291	기타가구	268t	352
호 두	150t	206	조 미 료	204t	273	콘베이어벨트	292u	328
기 타	-	3,438	식 용 유	161t	245	재 봉 기	114t	291
			칼 라 TV	2,010대	231	채소종자	1,369u	265
			신호발생기	24대	223	엘리베이터	12t	262
			돼지가죽	34,590sm	214	종 이 류	5u	262
			기계부속품	-	214	자동차용신부속품	327t	242
			라 미 사	-	211	기 타	76t	7,780
			펄 프	46t	207		-	
			종이상자	400t	204			
			기 타	122t	2,466			
계		64,435	계	-	69,638	계		115,269

주 : 대상품목은 연간 20만달러 이상 반출물품

(3)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우리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가방을 간접교역방식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838천달러, 1993년 7,008천달러, 1994년 25,663천달러, 1995년 46,436천달러, 1996년 74,402천달러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1997년 위탁가공 교역액은 79,06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이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탁가공교역 추진을 향후 남북경협을 준비과정으로 보아 국내기업들이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측으로서도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투자부담 없이 외화획득이 가능하고, 낙후된 경공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임금수준 차이 등 상이한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상호보완성이 높은 위탁가공분야는 섬유류, TV 등 가전제품 조립, 자동차용 전기제품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신발·완구·슈트카바 등도 일부 반입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위탁가공 현황>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금액	위탁가공	비율	금액	위탁가공	비율	금액	위탁가공	비율
'89	18,655	—	—	69	—	—	18,724	—	—
'90	12,278	—	—	1,187	—	—	13,465	—	—
'91	105,722	—	—	5,547	—	—	111,269	—	—
'92	162,863	638	0.4	10,563	200	1.9	173,426	838	0.5
'93	178,166	2,985	1.7	8,248	4,023	47.8	186,591	7,008	3.8
'94	176,298	14,321	8.1	18,248	11,342	62.2	194,546	25,663	13.2
'95	222,855	21,174	9.5	64,435	24,718	38.4	287,290	45,892	16.0
'96	182,399	36,238	19.9	69,638	38,164	54.8	252,037	74,402	29.5
'97	193,069	42,894	22.2	115,269	36,175	31.4	308,338	79,069	25.6
계	1,252,305	118,250	9.4	293,381	114,622	39.1	1,545,686	232,872	15.1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 개황

1991년 남북한간에 체결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는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남북한간에는 공식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사정에 따라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1993년말까지 남북한간에 이루어진 5억불 상당의 교역물자 수송은 모두 외국선박

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남북간의 항로에 내국선사의 참여기반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내부의 항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4년 6월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아직까지는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대부분이나 1995년 쌀 15만톤 대북지원, 1997년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물품과 경수로 물자를 우리 국적선이 운송한 사례와 같이 남북간 해운분야의 상호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남북간 선박운항

가. 운항횟수

남북간 수송장비운행 승인제도가 시행된 1994년 7월에서 1997년까지 남북간 수송장비운행은 편도기준으로 1,083회이다. 이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행이 743회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행 340회보다 약 2.2배가 많다. 남한지역에서는 인천항, 부산항, 북한지역에서는 남포항, 나진항으로 선박운행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행 현황>

(단위 : 횟수)

구분	'94.7~12	'95년	'96년(A)	'97년(B)	증가율(B/A)
남한→북한	27	99	101	113	11.9%
북한→남한	70	208	221	244	10.4%
계	97	307	322	357	10.9%

나. 물동량

1994년 7월부터 1997년까지 남북간의 물동량은 1,711천톤이며, 이 중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이 914천톤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 797천톤보다 약 1.2배 정도가 많다. 이러한 물동량 추이는 반입 위주의 남북교역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항구별로는 남한지역의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부산항 등과 북한지역의 나진항, 남포항, 청진항 등이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94.7~12	'95년	'96년(A)	'97년(B)	증가율(B/A)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144.3%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33.1%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82.1%

다. 국적선 운항

남북한은 1992년 7월 19일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에 교통로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남북간의 물자수송을 위한 임시 교통로가 개설되고 있다.

남북간 직접 합의에 의한 정기 해로는 개설되지 않았으나,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행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에 규정된 바지선과 소형선박에 의한 물자 수송로

와 KEDO 인원·물자의 수송로 등 2개의 수송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적선이 경수로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이 수송로를 통해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인 한나라호가 동해항에서 신포지역의 양화항까지 2회에 걸쳐 왕복 운항하였고, 바지선인 KOREX CHAMP호와 소형선박인 KOREX PUSAN호가 울산항에서 양화항까지 경수로 초기건설 장비와 물자들을 수송하였다.

한편 1997년 5월 26일 대한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회간에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의 인도·인수 지점을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홍남항으로 합의하고 동 항구들을 통해 우리 국적선이 3회에 걸쳐 밀가루, 라면 등 대북 지원물품을 운송하였다.

Ⅲ. 남북교역 추진 절차

1.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왕래

(1) 북한주민접촉

가. 접촉의 개념

북한방문,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협의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법에서 말하는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나. 북한주민접촉 절차

① 북한주민접촉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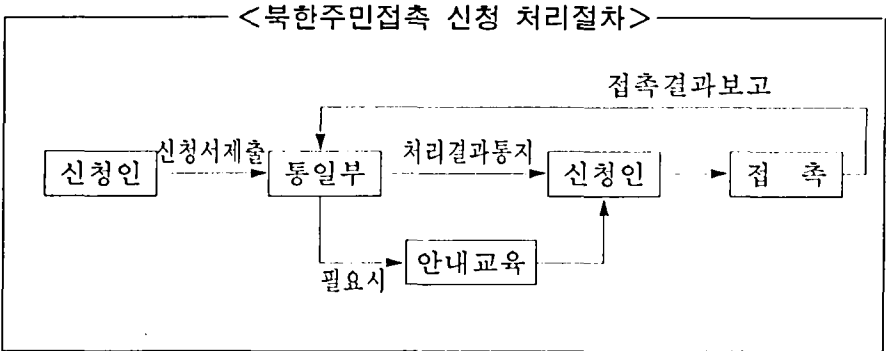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 신청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5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문서에는 접촉신청이 승인된 경우 접촉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접촉방법, 승인 유효기간 등이 적시되며, 불허의 경우에도 불허사유가 명시된다.

신청 처리기간은 보통 15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 접촉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원진술서>에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 및 한국무역협회지부에 비치되어 있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촉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내용과 접촉목적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접촉계획서는 신청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교류사업과 접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 기재한 접촉목적, 접촉경위, 접촉일정 및 장소 등의 내용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소정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신청단체소개서는 교류주체의 남북교류 수행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자료서 조직현황, 정관, 주요 활동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초청장, 행사개요서, 프로그램 등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면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③ 접촉 안내교육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교육은 북한주민접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주민접촉시 행동요령, 기

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④ 접촉결과 보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결과보고는 특정양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⑤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된다. 승인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 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당초 승인받은 접촉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별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남북한 왕래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법 제9조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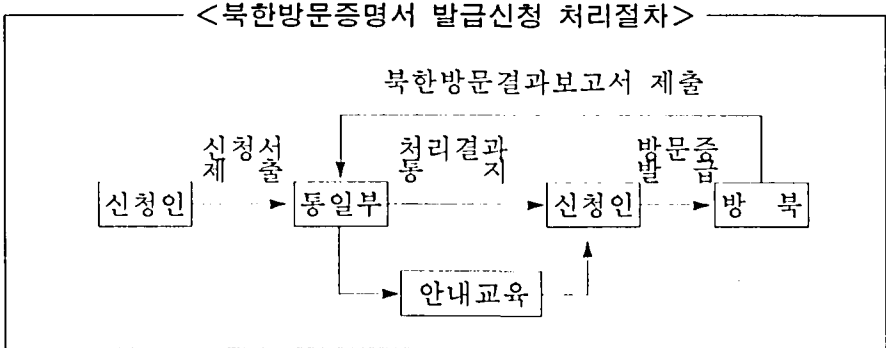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북한방문증명서>가 교부되며,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우송된다.



②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부 및 한국무역협회지부에 비치되어 있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 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 예정경로 등을 기재하며, 우측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원진술서>는 북한주민접촉시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관련 문서를 의미하며,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신청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북활동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 내용과 방북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③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최초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 수시방북제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1회 승인으로 1년 6개월의 범위내에서 수시방북이 가능한 수시방북제도의 적용대상이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모든 기업인”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시방북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등에 의해 수시방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방문자는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⑤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부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에 소개되어 있다.

⑥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와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해야 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부에 반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⑧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된 보고서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다.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되므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청서류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 <신 청 서 류> —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 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라.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판문점과 제3국을 통한 왕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과거 남북당국간 회담이나 남북간 전통음악 교환공연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입국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과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의 남한선수들은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온 북한선수들과 함께 「서울결단식」을 갖고 포르투갈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곧장 입북하여 「평양해단식」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바 있다.

마.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① 재외국민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이다.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유학생·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체류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②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2. 남북교역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을 말한다.

따라서 제3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입)에 해당되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남한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대외무역(수입)에 해당된다.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절차와 구분되는 반출·입절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북한산 물품의 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3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의미의 남북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도 연계교역, 임

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이라 함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가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중 위탁가공교역은 최근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다.

(2) 남북교역의 당사자

남북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 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신고를 한 자이면 남북교역을 할 수 있으나, 유통질서확립 또는 보건·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체계에서 특수한 자격을 요구하는 품목을 교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의 취급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특수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예>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 식품류 : 수입식품판매업 신고
- 주 류 : 주류수입(중개업) 면허 소지

- 북한도서 및 정기간행물 : 문화관광부 허가와 등록
-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 : 독극물 수출입업 등록
- 한약재 :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소지

(3)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남북교역대상물품의 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해 남북교역 대상물품은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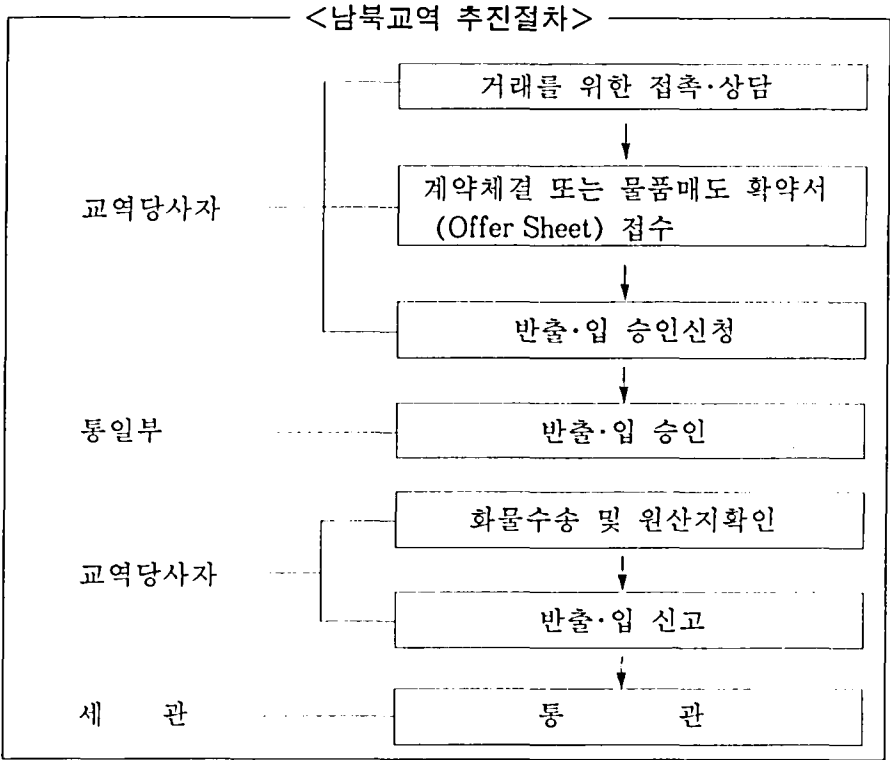
-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 ②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한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필름 포함), 엽서·연하장
- ③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 ④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 ⑤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기재한 품목(부록 참조)

〈반출·입 포괄승인품목〉

- ① 교역대상물품중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의 품목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 ② 법 제17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단, 제3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부록 참조)
- ③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입할 수 있으며,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출·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다.

(4) 남북교역 추진절차



가. 접촉 및 상담

북한측 교역당사자와의 접촉 및 상담은 거래초기에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콩·일본·중국·싱가폴 등 제3국의 무역상·해외동포·한국상사의 제3국 현지법인 등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간 교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한 접촉·상담경험과 거래과정을 통해 조성된 상호신뢰를 토대로 북한측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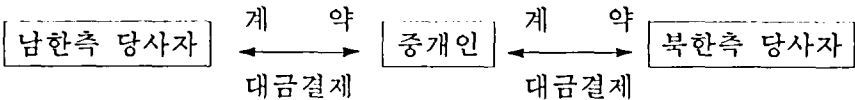
당사자와 직접 접촉·상담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 접촉·상담은 주로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교역을 위한 북한주민접촉을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나. 계약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형태 등에 따라 남북교역은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된다.

간접교역은 남한의 교역 당사자와 북한의 교역 당사자 사이에 중개인을 매개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로서, 현재 전체 남북교역의 약 90% 이상이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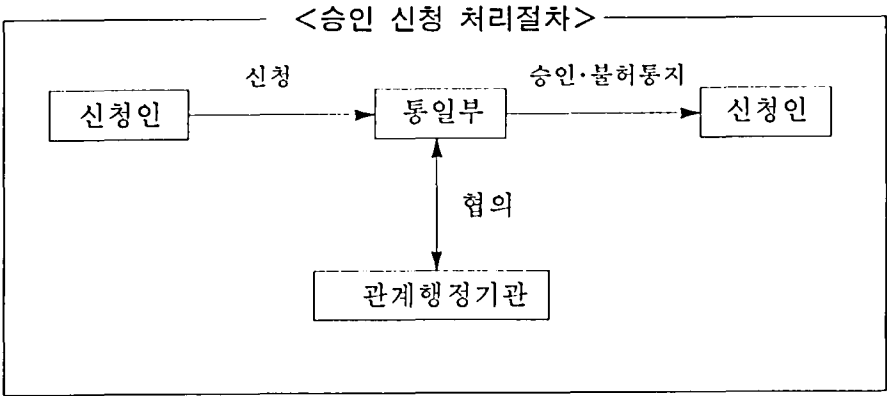


직접교역은 남북한의 교역당사자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되는 형태로서, 현재로서는 교역분쟁발생시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직접교역을 바람직한 남북교역의 형태로 보아 이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승인여부 검토나 통관시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

간접교역의 경우 북한측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중개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한 교역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개인의 보전능력 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다. 반입·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① 반입승인

반입자는 반입물품이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에 의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중 미화 5천달러이상의 금액, 대금결제방법, 승인유효기간, 승인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한편,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입신청 접수시 통일부에서는 당해 품목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 측면에 대한 고려,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반입 품목 결정시 이들 기준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반입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비 서 류> —

1. 북한물품 반입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2.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 1부(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입대행 계약서 1부(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4.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② 반출승인

반출의 경우에도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품목은 대부분 반출포괄승인품목으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승인없이 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출신고시 세관에 동 물품이 북한에 반출(제3국 단순경유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반출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비 서 류> —

1. 대북한 반출승인신청서(소정양식) 5부
2.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3. 반출대행계약서 1부(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무역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북한주민접촉승인서 사본 및 접촉결과보고서 각 1부 등

③ 반출입승인

반출, 반입이 연계되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대응물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때에는 반출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출입 혼합거래 형태로는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물물교환, 구상교역, 대응구매)과 중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이 있다.

연계교역에 의한 반출입승인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하나의 계약서로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남한 물품을 반출하고 그에 상응하여 북한의 물품을 반입하는 형태의 물물교환이 있으며, 일부 위탁가공교역도 반출입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반출입승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비 서 류>

1. 반출입승인신청서 5부
2. 반출·반입계약서 1부(하나의 계약서)
 -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 추가
3.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반입과 동일)

라. 대금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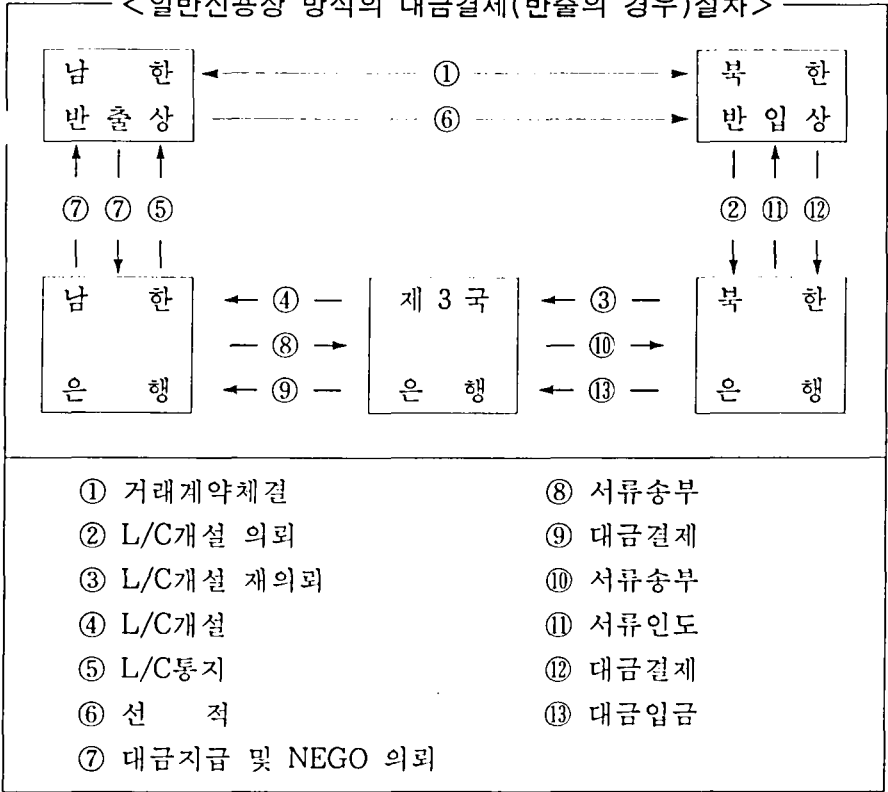
남북간에는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제8항에서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일반 수출입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외국환관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결제방법과 결제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다.

남북교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일반 신용장(L/C) 방식이며, 물물교환(Barter Trade)이나 송금환(T/T) 등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 방법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 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교역품목이 포괄승인품목일지라도 대금결제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신용장 방식의 대금결제(반출의 경우)절차>



마. 화물 수송

남북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제5항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러한 합의사항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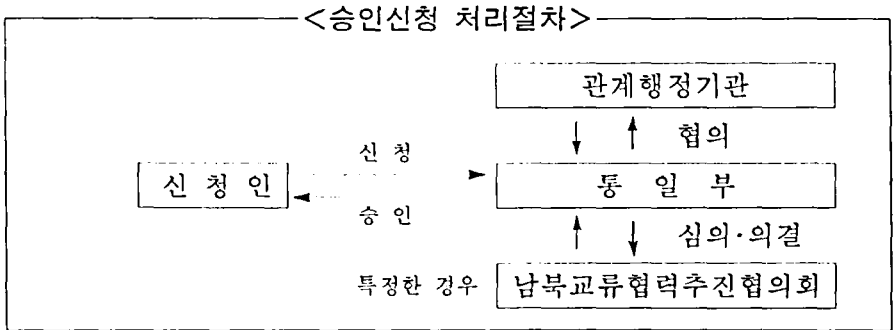
현재 남북간 물자의 수송은 제3국적선의 부정기 운항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들 선박은 제3국을 경유하여 운항하거나 공해상을 통해

남북간을 직운항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및 영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과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4-1호)」에 의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주민(법인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포함)도 남북한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대상이 되고, 제3국 항구를 경유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이며,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비 서 류>
1.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운행계획서(운행경위 포함) 1부
 - 운행경위에는 운행일자, 운송경로, 수송화물내역, 화주 등의 내용 기재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내역서 1부

- 사용할 수송장비 미확보 시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
- 선박의 경우는 선박국적증서 사본
- 4.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선박의 경우, 북한→남한간 부정기운항의 경우에는 불필요
- 5. 소정의 운행안전교육 이수 증빙서류 각 1부
 - 수송장비 운행요원 중 남한주민이 있을 경우 : 방북승인과 소정교육을 받고 이수필증도 제출
- 6. 대리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대리신청의 경우)
-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바.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남북교역물품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으나(양식도 일반수출입신고서 사용),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절차가 부수되는 점이 일반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와 다르다.

① 반입물품통관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의 반입통관 절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관세청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관세가 비과세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검사 후 면

허처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직반입한 물품의 반입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
- 가격신고서(invoice,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사본
- 최근 2개월간의 선장확인 선박항해일지
- 원산지증명서
- 기타 검역물품인 경우 당해 검역증(식품인 경우 식품검사 합격증) 및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서류

아울러 제3국을 단순경유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반입한 경우의 제출서류에서 선하증권사본, 선박항해일지를 아래와 같은 서류로 바뀌서 제출하면 된다.

-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 일체
- 제3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단순경유증명서

②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i)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당해 물품이 당해국 물품(원산지증명서)이거나 통과물품(재수출원산지 증명서) 또는 당해국에서는 가공만 거쳤음(가공원산지증명서, processing C/O)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등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수출물품이 당해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라 하지 않고 “산지증명서”라고 부른다.

○ 원산지증명서의 수록내용 및 인정기준

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지증명서”등의 발송인, 수화인등은 수입승인서(또는 반입승인서)상의 송화인과 일치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수량·중량도 수입승인서(반입승인서)상의 수량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유규명을 위한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한다.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 함은 국제관행상 작성방식(일정양식 사용, 타자 등으로 작성)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관행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손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국제협약에 맞지 않으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 사용언어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또는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조선무역은행의 경우는 남한의 한국은행과 같은 조선중앙은행 산하의 은행으로서 은괴, 금괴 등 귀금속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산하의 원산, 흥남, 평양, 남포, 송림, 청진, 해주, 송악산등 대외상품검사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예) 남포에서 발행한 경우(51-3-41) : 남포대외상품검사소

번호-검사원번호-발행일련번호

ii)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시 관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모두 관세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산지가 북한임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반입된 물품이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은 물품

북한산 물품이 관세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8-2호 : '98. 6. 19 개정)에 의거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는 품목이며,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개별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이다. 따라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이외의 「포괄승인품목」에 대해서는 동관시 남북교역 대상물품임을 신고하면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대상 물품중 통상적인 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품의 견본 등을 반입할 때는 상기의 반입승인서는 필요없고 북한산물품 반입사유서 및 그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

하면 비과세통관도 가능하다.

○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관세 비과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북한이어야 하며, 반입통관시 세관에 이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확인 방법은 ①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②상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③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치 않아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14조)

-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되었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반입된 물품
- 직반입된 물품의 확인방법

북한은 내부사정상 남한을 직교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운송선박이 출항시 신고한 국가로 실제 운항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결국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하증권상

의 운송목적지와 실제운송경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 통관시에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과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당해선박의 북한입항 여부와 당해 물품의 북한선적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하여 주고 있다.

• 제3국 단순 경유물품

단순경유라함은 운송상의 이유등에 의해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등만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한 물품이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지 않은 물품 즉 제3국에서 수입통관후 국내반입된 물품은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일반수입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도 비과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 단순경유 여부 확인방법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거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제3국에서 환적·일시장치등으로 단순경유하였음을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확인한다.

<경유국별 단순경유 입증서류>

(1) 홍콩차이나

— 홍콩차이나상공회의소 발행 “재수출원산지증명서”

(2) 일 본

— 일본세관 발행 “적려허가통지서(積戻し許可通知書)”

(3) 중 국

① 내륙운송의 경우

• “과경화물보관단(過境貨物報關單)”

— 국외(북한)에서 출발하여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

② 항공 및 해상운송의 경우

• “진구화물재화청단(進口貨物載貨青單)”

— 국외(북한)에서 운송을 시작하여 중국 항구 또는 공항을 거쳐 원 수송장비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外國貨物轉運准單)”

— 중국에서 수송장비를 바꾸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③ 중국 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경우

• “진(출)구화물보관단(進(出)口貨物報關單)”

— 단, 동서류의 무역방식란에 전구무역(轉口貿易)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③ 반출물품 통관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수출품과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레이다, 고성능컴퓨터, 야간투시경 등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의 부정유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 관세 등

① 관세

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운송(제3국 단순경유 포함)된 반입물품중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직운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② 내국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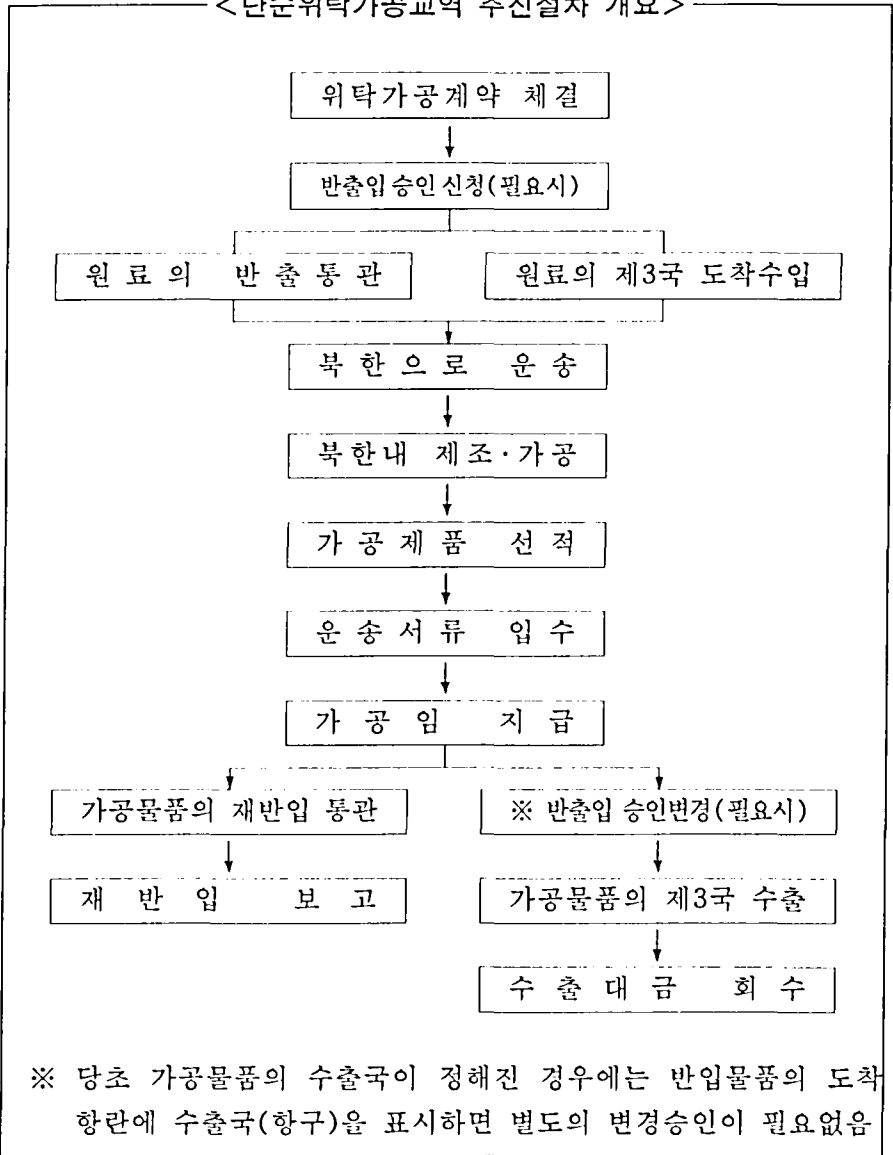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시 과세표준에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관세평가시행세칙」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된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실제 지불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관세환급

일반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이를 환급한다.

(5) 위탁가공교역

<단순위탁가공교역 추진절차 개요>



가. 위탁가공교역 개요

대북한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의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동 가공제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교역을 말한다.

나.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반출입 승인절차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일반물품 반출·입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시설재를 공급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있어 기계·장치·설비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보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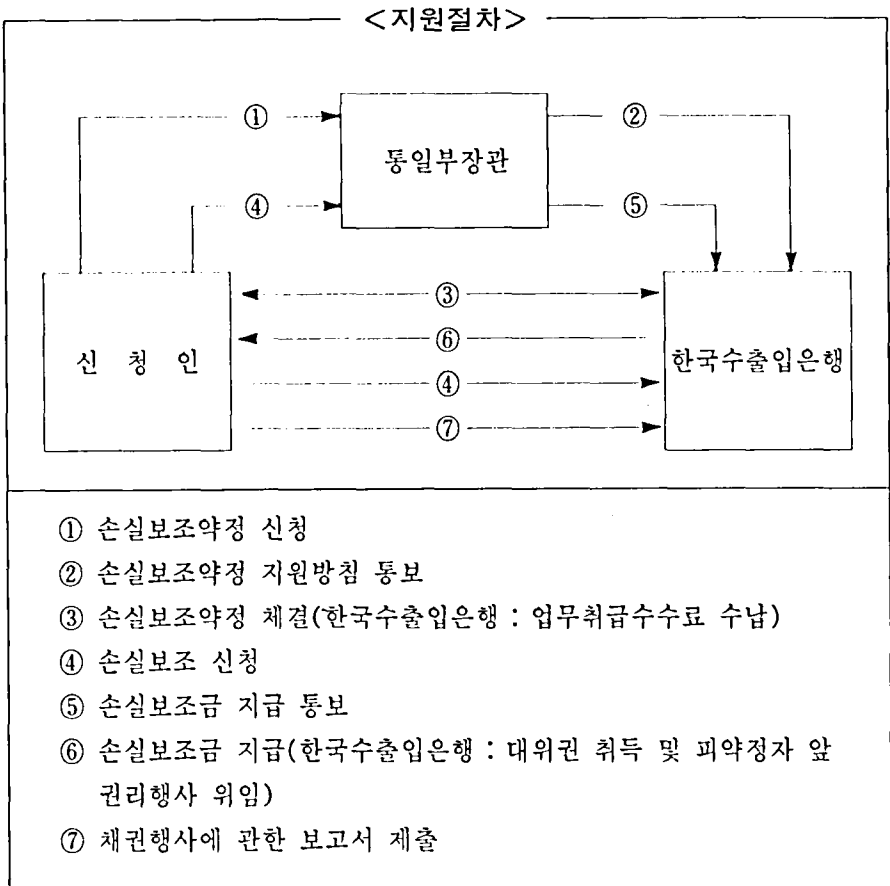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제9조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융자·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융자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금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금종별	지 원 한 도	지 원 조 건
반출·입 자금대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매 사업별로 결정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 출	계약금액의 90% 범위 내	이자율 : 연 5.0% 기 간 : 10년 이내(거치기간 3 년내 포함)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 관련 주식, 채권, L/C, L/G, P/N 등
손실보조	교역·경제협력사업관련 손실의 90% 범위 내	업무취급수수료 : 0.1% 대금결제 및 사업기간 이내
채무보증	피보증인과 용자은행간 계약상 보 증한도 범위 내	이자율 : 통일부장관이 정함 기 간 : 당해거래 용자기간에 30 일 가산기간 이내 담 보 : 남한 내 담보 또는 사업 관련 주식, 채권, L/C, L/G, P/N
금융기관 손실보전	손실금액 범위 내	
금융기관 용자자금 미결제 채권인수	용자취급 범위 내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 채권액 범 위 내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북한원화 인수매각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별도로 정함	
주민양래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무 상

자금종별	지 원 한 도	지 원 조 건
문화학술 체육협력 지원자금	소요자금 범위 내	무 상
민족공동 체 지원	남북한 당국간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름	

(1) 손실보조



가. 손실보조 대상

기금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조 대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에 의하여 교역을 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이거나 동법 제 17조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협력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 한다.

① 교역인 경우

-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인한 손실
-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
-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투자원본,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 배당금인 경우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나. 손실의 인정범위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로 하고,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로 한다. 배당금 손실의 경우에는 주식 및 지분의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조 제외대상>

-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 손실보조약정 효력발생(업무취급수수료 납부)이전에 발생한 손실
-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형태의 손실보전을 받은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다. 신청 및 약정 절차

①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시행 전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약정 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손실보조약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손실보조약정 신청액 산출명세표

- 신청인,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동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한국 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의 지원방침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신청자(이하 “피약정자”)와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③ 피약정자는 업무취급수수료(손실보조 약정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1부를 교부받는다.

라. 손실보조약정의 효력 발생 및 해지

① 피약정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취급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한 날로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며, 그 약정의 범위 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② 피약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이 취소·해지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약정체결 당시에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아니한 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법령 및 손실보조약정을 위반한 때

③ 교역이나 용역의 제공·송금 등 사업의 개시 자체가 피약정자의 귀책사유없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환

급받을 수 있다.

마. 약정내용 변경절차

① 피약정자는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서 3부와 당해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약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피약정자는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약정변경을 승인하는 뜻이 기재·날인된 손실보조약정 변경승인서 1부를 교부받는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 교부 전에 업무취급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바. 손실보조금 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동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손실보조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 부 서 류>

- 손실보조금 신청 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사. 보조금의 지급범위

손실보조금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범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전액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아. 피약정자의 의무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약정 체결 후 준수하여야 할 약정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반출 및 송금 등 이행통지 : 물품의 반출·용역제공·자금의 송금 등이 이행되었을 때는 동 사실증명서류 사본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험발생 통지 : 손실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안 때 또는 손실의 발생을 안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수노력 : 손실보조금 지급을 청구한 피약정자는 이와 관련한 미회수금의 회수 및 권리행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수금 납부 :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회수금계산서 제출 및 회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위권행사 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손실보조금 지급에 따라 취득한 대위권을 행사할 시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⑥ 채권행사 보고 : 손실보조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손실보조금 반환 : 손실보조금 반환대상이 되어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받았을 때에는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보고 및 조사협조 : 기금수탁관리자가 약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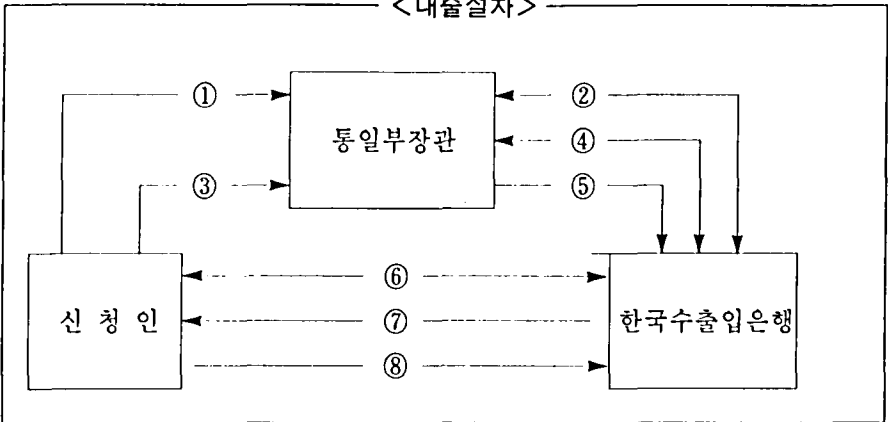
(2) 자금대출

가. 자금대출 대상

① 기금에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한과 북한간에 교역을 하거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②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대출절차>



- ① 사전협의
- ② 사전협의 의견요청 및 의견서 제출
- ③ 대출신청
- ④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제출
- ⑤ 지원방침 통지
- ⑥ 대출계약 체결
- ⑦ 자금집행
- ⑧ 대출금사용결과보고 및 사업보고서 제출

나. 대출한도 및 조건

① 반출·반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이내이며, 대출조건은 반출·반입 유형별로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경제협력사업인 경우,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90이내이며, 대출형식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하는데,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이자율은 연 5%이며,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고, 원금은 연 1회이상 정기분할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담보는 남한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담보 이외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조의 약정도 가능하다.

다. 대출절차

①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금대출 신청에 앞서 통일부장관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 부 서 류>

- 사업내용
- 사업추진 경위
- 대출신청 예상내용
- 추정수지명세서
- 차주, 제작사, 사업상대자의 개요
- 협의서 사본
-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대출 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 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신청인은 기금수탁관리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대

출발는다.

— <첨 부 서 류> —

- 사업승인서 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 대출신청 내용
- 이사회 기재결의서
- 차주, 제작자,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라. 대출받은 자의 의무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기한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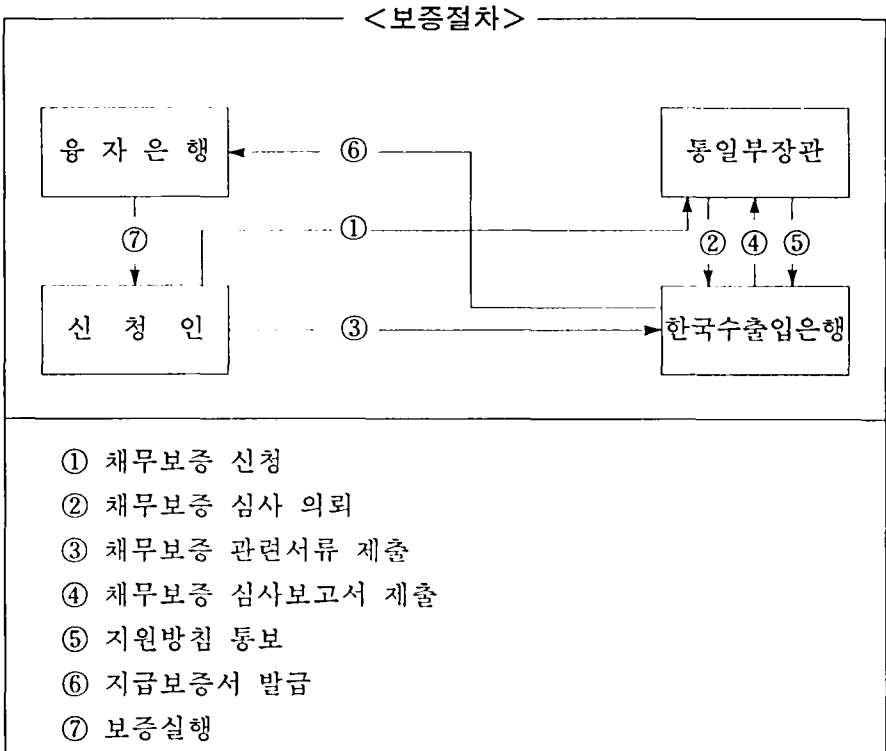
— <보 고 서 류> —

- 주식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4월 이내
- 배당금 및 원리금 회수보고서(증빙서 첨부) : 회수일로부터 2월 이내
- 청산예정보고서 : 청산결정 후 1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 명세서 : 청산일로부터 2월 이내
-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 해당 사실 발생 후 2월 이내

② 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대출계약에 의해 약정된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는 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이 현금일 때는 2영업일 이내, 물품인 때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③ 대출받은 자는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채무보증



가. 의뢰인과 수혜자

의뢰인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이 되며 수혜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된다.

나. 보증 대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 보증 조건

- ① 보증형식은 증서에 의한다.
- ② 보증금액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 내로 한다.
- ③ 보증기간은 당해 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④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경우도 있다.

라. 보증 절차

의뢰인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을 심사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면 수혜자는 지급 보증을 받게 된다.

<첨 부 서 류>

- 사업계획서
- 이사회기재결의서
- 담보제공 계획서
-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4) 금융기관 지원

① 금융기관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손실에 대해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부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당해 손실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은 융자취급액 범위 내에서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융자 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통일부장관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가. 지원대상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

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의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나. 지원절차 및 조건

①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으로는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금융기관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절차는 전술한 각 지원 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지원형태

남한정부가 특정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북한에 제안했을 때,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에는 반출에 필요한 물품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경비 일체가 지원대상이다.

북한측의 교역당사자가 남한으로부터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거래조건이 남한의 교역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남한정부가 민족공동체회복지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역이 실행된 경우, 이것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것은 남북간 청산결제제도가 시행된 경우 스윙 방식에 의해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승인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며 민족공동체회복지원차원의 교역은 동 물품이 꼭 필요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어, 남북교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타부문의 남북교류협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교역은 비교적 물량이 방대하거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개별기업이 책임지는 차원의 교역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서, 북한주민의 복지에 관련되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지원유형간의 관계

① 손실보조는 북한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후적 손실만을 그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보험적 성격이 짙다.

② 교역관련 손실보조약정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지원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의 직접계약과 직접수송에 의한 직교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자금대출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자금대출한도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사업유형별로 결정되므로 대출신청 전에 자금대출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대출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④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손실보조약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기금 지원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여부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부록>

남북교역 관련 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83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91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108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110
5.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112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116
7.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128
8.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130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137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143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148
12. 남북협력기금법160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164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170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172
16.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193
1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이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197
18.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204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2. 12. 8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1994. 12. 31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1996. 12. 30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협의회의 의사)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3 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

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4 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 15 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협력사업자)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

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5 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6 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자도입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27 조(벌 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8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 29 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30 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
(교통세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병역법시행령)
1996. 5. 31 대통령령 제15006호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39호
(우편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

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0 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 12 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0인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 13 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 15 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 16 조(방문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19 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 20 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21 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 22 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23 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 24 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4 장 교역

제 25 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회의 의결전에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6 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 27 조(변경 승인사항 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8 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9 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력사업

제 30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제 31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33 조(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4 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 35 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36 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8 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9 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0 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 41 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 42 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 44 조(협의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선박 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 46 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 47 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 48 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 49 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0 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고시한다.

제 51 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제 52 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 53 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속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출입신고서등) ①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수송장비은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부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 마. 보호문화재등
 -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검역대상 물품
 -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

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등 개정에 따른 고시·
훈련등 개정에 관한 고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부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 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 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 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는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 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 10 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등

제 11 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 12 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부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부고시	제91-2호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4호
	1995.	1. 3	통일부고시	제95-1호
	1996.	3. 5	통일부고시	제96-1호
	1997.	4. 1	통일부고시	제97-1호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1998.	6. 19	통일부고시	제98-2호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품목분류)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 3 조(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교역대상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본다.

1.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비디오필름 포함), 엽서·연하장
3.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4.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5. 반입물품으로서 별표1에 계기한 품목

제 4 조(반출·입 포괄승인품목) ①교역대상물품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이외의 품목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②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그 협력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한 물품은 사업승인의 범위내에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단, 제3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③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벌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으로 본다.

제 5 조(반출·입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반출·입은 통일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단,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 전략물자의 반출·입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등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포괄승인품목의 반출·입은 별도의 개별적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입 승인 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받은 반출·입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단, 제3조의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반입하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받은 경우에만하여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	0102-10-1000	소(종우/젖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1-99-9070	미꾸라지(환어)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21	0303-79-9095	민어(냉동)
22	0303-79-9093	홍어(냉동)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4	0307-29-1000	가리비(냉동)
25	0307-49-1020	오징어(냉동)
26	0307-59-1020	낙지(냉동)
27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28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29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0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1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32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3	0402-91-1000	무당연유
34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5	0402-99-1000	가당연유
36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37	0403-90-1000	버터밀크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38	0404-10-1010	유장분말
39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0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1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이외)
42	0409-00-0000	천연꿀
43	0410-00-3000	로얄제리
44	0701-10-0000	감자(종자용)
4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46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47	0703-20-0000	마늘(신선·냉장)
48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49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0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51	0712-20-0000	양파(건조)
52	0712-90-1000	마늘(건조)
53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4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5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6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7	0714-20-1000	고구마(신선)
58	0714-20-2000	고구마(건조)
59	0714-20-3000	고구마(냉장)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60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61	0714-90-9090	서류(기타)
62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3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4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5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6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7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8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69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70	0805-90-0000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그레이프 푸르트 이외/신선·건조)
71	0810-90-3000	대추(신선)
72	0813-40-2000	대추(건조)
73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이하 포장)
74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75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6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7	0910-10-0000	생강
78	1003-00-1000	맥주맥
79	1003-00-9010	겉보리
80	1003-00-9020	쌀보리
81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82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4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5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6	1006-10-0000	벼
87	1006-20-1000	메현미
88	1006-20-2000	찰현미
89	1006-30-1000	맷쌀
90	1006-30-2000	찹쌀
91	1006-40-0000	쇄미
92	1007-00-1000	수수(종자용)
93	1008-10-0000	메밀
94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5	1102-30-0000	쌀가루
96	1102-90-1000	보리가루
97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8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9	1103-12-0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0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1	1103-14-0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2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3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4	1103-21-0000	밀(펠리트)

연번	품 목 번호 HSK CODE	품 목
105	1103-29-1000	쌀(펠리트)
106	1103-29-2000	보리(펠리트)
107	1103-29-9000	곡물(기타/펠리트)
108	1104-11-0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9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0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1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2	1104-21-0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4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5	1104-29-1000	윤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6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7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8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9	1107-10-00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20	1107-20-1000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121	1108-11-0000	밀 전분
122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3	1108-13-0000	감자 전분
124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25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6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7	1108-20-0000	이눌린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28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9	1201-00-9000	대두(기타)
130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1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2	1207-40-0000	참깨
133	1211-20-1100	수삼
134	1211-20-1210	백삼(본삼)
135	1211-20-1220	백삼(미삼)
136	1211-20-1240	백삼(잡삼)
137	1211-20-1310	홍삼(본삼)
138	1211-20-1320	홍삼(미삼)
139	1211-20-1330	홍삼(잡삼)
140	1211-20-2210	홍삼분
141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2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3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4	1211-20-9200	인삼종자
145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6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7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48	1302-19-1210	홍삼정
149	1302-19-1220	홍삼정분
150	1302-19-1290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51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2	1702-11-1000	유당
153	1702-19-1000	유당
154	1702-90-1000	인조꿀
155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6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57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58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59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0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1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2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3	1902-19-2000	당면
164	2008-11-9000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65	2009-30-9000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166	2103-90-9040	메주
167	2106-90-3021	홍삼차
168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연번	품 목 번 호 HSK CODE	품 목
169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70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71	3505-10-3000	배소전분
172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73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74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75	3505-20-1000	전분 글루
176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77	3505-20-9000	기타 글루
178	5004-00-0000	견사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 20 통일부고시 제94-1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제 2 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변경승인신청)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추가자료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 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8. 4. 13 관세청고시 제98-13호
(정부조직법등 개정에 따른 고시·
훈령등 개정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 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 4 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 6 조(관 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7 조(내국세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구비조건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당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승인면제물품통관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 13 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 14 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 15 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 확인 항해일지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원산지 증명서) ①원산지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

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의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 17 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진문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8 조(심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 19 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보 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3.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 21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2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계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 4 조(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

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구비서류가 불필요하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 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

추여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산업입지조건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등) ①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 실적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

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
(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
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마. 회사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 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
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기재사항이 불필
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
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 12 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중등 제 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이내)
3. 회사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부고시 제94-3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 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 계획서, 사무기기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 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승인 처리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내용변경 신고) ①사무소를 설치한 후 그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유효기간) ①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이내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사무소 설치보고등) ①사무소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설치승인의 취소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승인의 취소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 6. 28 재정경제부고시 제95-23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정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 5 조(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인설립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 6 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 7 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 8 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금의 송금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투자금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 11 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보고서의 제출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하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지사

제 14 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 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 15 조(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8 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

무소의 환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분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분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인증일부터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9 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 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

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 20 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북한지사의 폐지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

열기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현지법인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④북한 현지법인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 ⑥재정경제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 법인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동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 25 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지침 제13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

행의 장애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생략>

12. 남북협력기금법

- 제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1993. 12. 31 법률 제4675호(국채법)
-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개정금융특별회계법)
- 1997. 12. 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 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4 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개정 93. 12. 31>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 5 조(장기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삭제<93. 12. 31>

제 7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국제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 93. 12. 31>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 9 조(기금의 회계기관)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 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10 조(일시차입)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보고 및 환수)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 12 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 13 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 14 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직제)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

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

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이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 11 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 15 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16 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 17 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9 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 20 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 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 17 통일부고시 제91-1호
개정 1998. 5. 12 통일부고시 제98-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 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10 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 12 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 13 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14 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 15 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감응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 18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9 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 20 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 21 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지원신청 변경)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 시기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신청인은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3 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24 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 25 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

제 26 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자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 27 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 28 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제 29 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 30 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 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 34 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5 조(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 37 조(면 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8 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39 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0 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1 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 42 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 44 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 45 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이내로 한다.

제 46 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 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5%로 한다.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이자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금의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 방법

원금은 연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 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47 조(사전협의) ①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 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49 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류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 51 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동일부장관에게 변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 52 조(예외취급) 동일부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 53 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②동일부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 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동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49 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 51 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 52 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 53 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4 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무보증

제 55 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 56 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57 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 58 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
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 59 조(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
부한 별지 제13조서식에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
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 60 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 61 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
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대
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 62 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 지원신청서2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동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 63 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동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 64 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인수조건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동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66 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 67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68 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9 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70 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 71 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72 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제 18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화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 15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 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 18 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형묵

18.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체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표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교역실무안내

1998년 9월 17일 인쇄

1998년 9월 21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3과
722-8911, 736-7205

인쇄처 : (주)국제정밀문예사
272-6914

<비매품>

